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0월 23일, 이만희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0월 2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1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1.27.)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3.11.)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만희 의원)

산림청은 2030 NDC 달성 및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부문 추진 전략의 일환으로 탄소저장고인 국산목재 이용 확대를 위해 산림분야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통한 고층 목구조물 연구를 추진하고 있음

국산 목재 이용 확대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자 산림청은 산림청(산하기관 포함)의 신규 건축물을 ‘목조건축’으로 조성하는 내용의 ‘탄소중립을 위한 목조건축화 선언’(’23.8.25., 산림청장)을 하였는바, 산림분야 과학기술 발전 및 목조건축물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지원이 필요함.

이에 따라 산림분야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과 국유임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가치증진 등을 위해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산림분야 공공기관이 국유임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임재금)

현행법 제29조에서는 산림청장이 국유임산물을 재해예방 및 복구, 재해를 입은 자의 재해복구에 필요한 건축자재 또는 임산연료의 공급, 용재의 가치가 없는 숲가꾸기 산물 등을 농·어업인 등의 자가소비용으로

로 공급하는 경우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4년간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현황을 살펴보면, 주로 연료 등 자가소비용으로 나타남, 국유임산물의 대부분은 저부가가치용으로 사용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 제27조에서는 국유임산물의 매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최근 4년간 국유림 목재 생산량 및 매각수익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목재생산량(471,728m³)은 4년 전 대비 감소하였고, 매각수익(177억원)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음.

이와 관련, 최근 4년간 국내 목재시장 현황을 보면, 목재자급률은 연평균 16.8% 수준에 불과하고 목재시장의 83.2%는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인바, 이는 지속적인 목재수요량의 감소 및 목재이용 여건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데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됨.

목재는 산림부문 탄소저장량을 증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축·건설부문 등에 고부가가치 용도로 그 이용이 활성화된다면 저탄소사회 구축에 상당한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이에 개정안은 목조건축 기술개발과 같은 산림분야 과학기술 발전 및 국유임산물의 우수성 홍보를 위하여 국가기관 또는 산림분야 공공기관에 국유임산물을 무상양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연구개발 재료의 원활한 공급 및 연구비용 절감과 나아가 국유임산물의 가치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그 입법 필요성은 인정되고, 산

림청도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입장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임.

첫째, 국유임산물의 매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27조제1항과 모순·저촉될 우려가 있으므로, 어떤 범위에 한정하여 무상양여를 적용할 것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법 제27조제1항은 산림청장에게 국유임산물의 경쟁입찰에 의한 매각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와 제3호에 따른 “국내 목재산업 육성을 위하여 목재 용도 및 매수인의 자격을 지정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들과 충돌되는 사항을 검토하여 적용 범위가 서로 저촉되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해 보임.

둘째, 개정안 중 “국유임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가치증진 등을 위하여”라는 표현은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불명확한바, 법집행 시 자의적 해석에 따라 무분별한 무상양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개발에 한정하여 무상양여 허용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준병)

- 국유임산물의 매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제27조제1항과 모순·저촉될 우려가 있으므로 조문 간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모호하고 추상적인 표현을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명확하게 하는 한편, 하위법령의 정비를 고려하여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시행하도록 부칙을 수정하여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9. 심사보고서 불입서류

- 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 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3. .

제 안 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개정안은 목조건축 기술개발과 같은 산림분야 과학기술 발전 및 국유임산물의 우수성 홍보를 위하여 국가기관 또는 산림분야 공공기관에 국유임산물을 무상양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국유임산물의 매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제27조제1항과 모순·저촉될 우려가 있으므로 조문 간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모호하고 추상적인 표현을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명확하게 하는 한편, 하위법령의 정비를 고려하여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시행하도록 부칙을 수정함(안 제29조제1항제4호, 안 제29조제1항제4호 각 목 신설, 부칙).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9조제1항제4호 중 “산림분야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국유임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가치증진 등을 위하여”를 “제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산림분야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 개발

나.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

안 부칙 중 “공포한”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9조(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① 산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제29조(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① ----- ----- ----- ----- -----.	제29조(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①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1. ~ 3. (개정안과 같음)
<u><신설></u>	4. <u>산림분야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국유임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가치증진 등을 위하여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산림분야 공공기관에</u>	4. <u>제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u> ----- ----- ----- ----- ----- ----- ----- -----

② (생 략)	<u>국유임산물을 공</u> <u>급하는 경우</u> <u><신 설></u> <u><신 설></u> ②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u>공포한</u> 날부 터 시행한다.	----- 가. <u>산림분야의</u> <u>과학기술 발전</u> <u>을 위한 연구</u> <u>개발</u> 나. <u>탄소흡수원</u> <u>증진을 위한</u> <u>목조건축 활성</u> <u>화</u> ② (개정안과 같음) 부칙 -----<u>공포 후 6</u> <u>개월이 경과한</u>----- -----.
----------------	---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산림분야 공공기관에 국유임산물을 공급하는 경우
 - 가. 산림분야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 개발
 - 나.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9조(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 3. (생략) <u><신 설></u>	제29조(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산림분야 공공기관에 국유임산물을 공급하는 경우 가. <u>산림분야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 개발</u> 나. <u>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